정 관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전부개정 2011.09.01.
개정 2012.11.08.
개정 2013.09.12.
개정 2015.04.01.
개정 2015.07.22.
개정 2015.12.29.
개정 2016.03.02.
개정 2016.07.27.
개정 2019.02.27.
개정 2023.08.11.
개정 2023.10.23.
개정 2023.12.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8.>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심사평가원의 주된 사무소(이하 “본원”이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 분사무소(이하 “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7. 22, 2023. 8. 11., 2023. 10. 23.>

제4조(정관의 변경) 심사평가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①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과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사평가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9. 12., 2023. 8. 11.>

② 제1항에 따라 직제·인사·보수 및 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제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심사평가원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심사평가원의 공고는 일반일간신문이나 심사평가원의 기관지·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개요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8., 2023. 8. 11.>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심사평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
2. 이사 14명
3. 감사 1명

② 원장과 이사 중 3명 및 감사는 상임(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원장은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8.>

⑤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 제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9. 12.>

1. 의약단체가 추천한 사람 5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한 사람 1명
3. 노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 사람 4명
4. 당연직이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⑥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3. 8. 11.>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심사평가원의 원장 및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10조에 따른 원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⑤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 3년
2. 이사(당연직이사 제외) 및 감사: 2년
3. 당연직이사: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

②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8. 11.>

1. 원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및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 제외) 및 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및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③ 제2항에 따라 상임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27.>

④ 제2항에 따라 원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원장과의 계약 등)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원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과 계약 내용 및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원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심사평가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직제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심사평가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심사평가원의 회계와 업무집행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규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를 대행할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의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 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평가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 8. 1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14조(임원의 당연퇴직과 해임) ① 임원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③ 임면권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48조, 제52조의3에 따라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7., 2023. 8. 11.>

④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심사평가원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법령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14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본조신설 2013. 9. 12.]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6조(공무원의 의제)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원장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제18조(직원의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당하게 강임·면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임직원 등의 의무) ①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상임임원의 직무청렴계약 등) ① 상임임원은 직무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임직원의 보수) ① 임직원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보수와 기타 업무수행에 따른 실제 비용을 받는다.

② 비상임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따른 실제 비용을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① 심사평가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의 본원 및 본부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23.>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조직) 심사평가원의 조직·업무분장 및 정원에 관하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① 심사평가원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 9. 12., 2015. 7. 22.>

1.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결산(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중요자산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49조제2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직제·인사·보수·회계 등 업무에 관한 주요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선임 등에 관한 사항
11. 원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
12. 수탁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13.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제30조제1항에 따른 원장의 해임 건의 요청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정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12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2. 11. 8.>

1.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는 15일 전)까지 구성원에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포함한 회의 개최계획 및 이사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원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선임비상임이사) ① 심사평가원에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30조(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원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원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이 연서(連署)하여 감사에게 심사평가원의 운영과 관련한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원장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등)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소속 및 대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 등을 기재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제32조(관계인의 의견진술)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정된 의안과 관계있는 자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회의록의 비치) ① 원장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회운영규정)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법령과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

제35조(사업)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9. 12., 2023. 10. 23.>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8.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관리 업무
9.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10.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11.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부상 분류체계의 개발·관리
12. 사업과 관련된 교육홍보
13.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산의 관리·운영
14.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5조의2(업무제공 및 시설의 관리운영) 심사평가원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또는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사용료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9. 12.]

제35조의3(사업수행) 심사평가원은 제35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2. 27.]

제36조(경영목표의 수립) ① 원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제1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원장의 권한의 위임) 원장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을 해당 요양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2., 2016. 7. 27., 2023. 10. 23.>

제38조(수탁계약의 체결) 심사평가원이 제35조제5호의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을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제39조(설치)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0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3. 2.>

②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원에는 중앙심사위원회와 의료평가위원회를 두고, 각 본부에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4. 1., 2023. 10. 23.>

③ 중앙심사위원회 및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

진료분야별 및 「약사법」에 따른 약학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합하여 하나의 분과위원회로 할 수 있다.

④ 의료평가위원회에는 질환별·평가항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4. 1.>

⑤ 심사위원회에 두는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의견의 조정 등을 위하여 본원에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와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두고, 본부에는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4. 1., 2023. 10. 23.>

제40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원장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9조의2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고자 하는 대학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수당 등을 심사평가원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3.]

제41조(상근심사위원의 공개채용 방법 및 절차 등)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상근심사위원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근심사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의 방법·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심사위원의 업무 등) ① 심사위원은 제40조에서 정한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들의 의약학적 타당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을 업무기능별 전문군으로 나누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요양급여비용 심사, 심사(심의사례 포함)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급여기준 상시·주기적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적정 진료 기준 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군별 수석위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7.]

제42조(운영규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위원의 임명 등에 관하여 법령과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이의신청위원회

제43조(설치)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1. 8., 2023. 8. 11.>

제44조(운영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등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제45조(설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6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질환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증질환별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중증질환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13.>

제47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2. 약사인 경우에는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3. 보건의료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보건의료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8조(운영규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과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49조(자산의 구분과 처분제한) ① 심사평가원의 자산은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② 심사평가원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매매·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자산

제50조(운영재원) 심사평가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공단의 부담금, 위탁받은 업무의 수수료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51조(회계연도) 심사평가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2조(회계의 구분) ① 심사평가원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의 수입·지출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별도의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53조(예산의 편성 등) ①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원장은 제36조에 따른 경영목표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1.>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장은 제5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53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예비비) ① 심사평가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예산 총액의 100분의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7.>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계속비) 심사평가원은 해당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7조(자금차입 등) ① 심사평가원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로 차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1.>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회계연도 중에 상환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상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차입을 한 경우 심사평가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제58조(결산) ① 원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59조(결산이익잉여금) 심사평가원은 매 회계연도에 결산상 이익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 7. 22.>

1. 익년도 이월금
2. 적립금
3. 기본재산

[제목개정 2015. 7. 22.]

제9장 보칙

제60조(서류의 비치) ① 심사평가원은 「정관」·재산목록 및 이사회의 회의록 등을 본원에 비치한다.

②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부칙<2011. 9. 1.>

이 정관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8.>

이 정관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9. 12.>

이 정관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1.>

이 정관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22.>

이 정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강원혁신도시 이전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9.>

이 정관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

이 정관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27.>

이 정관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2. 27.>

이 정관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8.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3. 10. 23.>

이 정관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3조제1항, 제37조, 제40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지원” 및 “지원장” 명칭 변경 부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의2의 신설 규정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